

부산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가단340135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2. B

변론 종결2017. 6. 8.

판결 선고2017. 7. 6.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9,027,300원 및 그 중 98,568,063원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2016. 11. 5.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B은 원고에게 6,307,0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의 기업은행에 대한 중소기업자금대출 원리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8. 18. 보증금액 50,000,000원, 보증기한 2011. 8. 18.부터 2012. 8. 17.(이후 2016. 8. 12.까지로 연장)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약정'이라 한다)을, 2012. 6. 12. 보증금액 47,500,000원, 보증기한 2012. 6. 12.부터 2013. 6. 11.(이후 2016. 6. 10.까지로 연장)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이후 2016. 4. 19. 피고 A이 이자를 연체하여 기업은행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2016. 7. 28. 98,568,063원(= 제1약정건 50,524,508원 + 제2약정건 48,043,555원)을 기업은행에게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대위변제일 이후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라.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피고로부터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비용으로 434,550원을 지출하고 24,243원을 회수하여 현재 410,307원의 대지급금이 남아 있다.

마.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보증자가 보증기한 내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최종보증료 납부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 전일까지 미상환 주채무원금잔액에 대한 연 0.8%의 요율에 의한 위약금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데, 최종보증료 납부일 다음날인 2016. 6. 11.부터 대위변제 전일인 2016. 7. 27.까지 47일간에 대한 위약금은 48,930원이다.

바. 피고 A은 2016. 3. 24.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B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B, 등기원인 2016. 3. 24. 설정계약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사. 피고 A은 2016. 4. 14. 소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거래가액 374,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아. C는 2016. 5. 16. 피고 B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위 날짜에 C는 피고 A의 피고 B에 대한 채무를 자신이 인수하며 45,000,000원을 2016. 6. 30.까지 대출받아 피고 B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채무인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99,027,300원(= 대위변제금 98,568,063원 + 대지급금 410,307원 + 위약금 48,930원) 및 그 중 98,568,063원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4858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체결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4. 19.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기업은행에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취소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공동담보를 더욱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 B은 피고 A이 채무를 변제하기 힘들 것 같다고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고 이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 B의 주장은 피고 A의 재산상태 악화를 인식하고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는 취지여서 사해의사를 자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 가액배상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한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근저당권자인 수익자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위와 같은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 이행으로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익자로 하여금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변제 이익을 보유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말미암아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5058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 A이 C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C에게 매도하면서, C가 2016. 5. 16. 피고 B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B이 위와 같이 C로부터 지급받은 35,000,000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에 터잡아 이를 말소하기 위한 대가로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익자로 하여금 근저당권 말소로 인한 변제 이익을 보유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바, 피고 B은 피보전채권의 한도 내에서 변제받은 금액을 원고에게 가액배상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35,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6,307,056원¹⁾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소외 D에게 지급한 5,000,000원이 가액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D에게 지급한 5,000,000원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하헌우

별지

1) 원고는 소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가 피고 B에게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B으로부터 가액배상금으로 지급받은 28,692,944원을 공제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